새로운 도약, 구민과 함께하는 서구의회

2026. 9. 22.

심 사 결 과 보 고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비고
4599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4599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22.

행정자치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8월 27일, 서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심사 일자: 제29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심사.의결(2026. 9. 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주민들의 제증명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 수수료 인하·감면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온라인 민원발급 서비스 정부24와 무인민원 발급서비스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제1항제1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옥주)

○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 주민의 제증명 수수료 부담 완화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 인하·감면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온라인 민원발급 서비스와의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6. 소 수 의 견: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599

제출연월일: 2026. 8. 27.
제 출 자: 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주민들의 제증명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 인하·감면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온라인 민원발급 서비스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제1항제1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

다. 합 의: 기획예산과 합의

라. 비용추계서 : 별첨

마.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체크리스트 제출

5) 입법예고 : 2026. 7. 13. ~ 8. 2.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각 호 전문개정 2011.11.14, 개정 2025. 12. 22.>	제8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26년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예산

나. 비용추계 결과

○ **(세입 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세입 감소
(세출 요인) 추가적인 세출 수요는 발생하지 않으나, 수수료 무료화에 따른 상시인력 인건비(근무일수 감소), 및 신용카드리더기 유지보수비 절감

다. 재원조달방안

○ 민원발급 증지수입: 구비 100%
- 등초본, 인감, 어디서나민원, 가족관계증명발급

3. 작성자

○ 민원여권과장 김해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	**△48,220**	**△48,220**	**△48,220**	**△48,220**	**△192,880**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수입		-	△48,220	△48,220	△48,220	△48,220	△192,880
세 출		-	**△11,909**	**△11,604**	**△11,290**	**△10,964**	**△45,767**
관리 용역비	유지보수비 (인건비)	-	△9,329	△9,024	△8,710	△8,384	△35,447
공공 운영비	신용카드리더기 유지보수비	-	△2,580	△2,580	△2,580	△2,580	△10,320
재원 조달		-	**36,311**	**36,616**	**36,930**	**37,256**	**147,113**
지방세 수입	소 계	-	36,311	36,616	36,930	37,256	147,113
	세외 수입	-	36,311	36,616	36,930	37,256	147,113

※ 산출내역

❍ 세 입: 최근 3년간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수입 평균

❍ 세 출

- 유지보수비: 상시인력 근무일수 단축(월 30일 → 15일)

(기존 / 2026년 기준) 21,900천원

(변경 / 2027년 추계) 12,571천원(△9,329천원 절감

2027년 상시 인력 인건비 산출내역 총 12,571천원

- 인 부 임: 12,459원*×4시간×(30일→15일)×6월×2명 = 8,971,000원

* 매 차년도 생활임금 상승률 3.4% 반영

- 여 비: 10,000원×(30일→15일)×6월×2명 = 1,800,000원
- 4대보험: 150,000원×6월×2명 = 1,800,000원

- 신용카드리더기 유지보수비(2026년 기준): 매년 2,580천원 미발생

❍ 재원조달: 민원발급 증지수입

- 등초본, 인감, 어디서나민원, 가족관계증명발급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